

# 본인확인서 (FATCA · CRS 개인/개인사업자용)

본인확인	담당	책임자

▶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한 「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」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.

## 1. 고객 인적사항

영문성명(대문자)	성(SurName)		생년월일	
	이름(GivenName)		연락처	

## 2.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

가. 다음중 해당란에 체크(√) 해 주시기 바랍니다 (FATCA · CRS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.)			
①	FATCA	<input type="checkbox"/> 01 : 미국시민권자(이중국적자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02 : 미국영주권자 <input type="checkbox"/> 03 :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	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을 선택 *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: 당해 연도에 31일 이상 체류하고, 과거 3년간 가중 평균하여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
②	CRS	<input type="checkbox"/> 05 : 미국이외의 해외거주자	한국/미국 이외의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목적상 거주자
③	<input type="checkbox"/> 04 : 모두 해당사항없음 (①,②에 해당되지 않을경우에 선택)		내국인 또는 거주자사실증명서 제출 및 반증증표를 제출한 경우
나. 가.에서 ①또는 ②에 표기한 경우 보고대상국가 및 납세자번호( TIN: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)등을 작성			
보고대상국가		납세자번호(TIN)	납세자번호 미기재사유 선택(V) (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할 경우에만 체크)
거주관할권(1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발급국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당국이 요구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취득
해외영문주소			
거주관할권(2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발급국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당국이 요구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취득
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			

## 2. 해외거주자 여부 확인

- ※ 거주관할권이란? 세법상 거주지가 속한 국가를 뜻한다. (조세협약국가)
- ※ 해외영문주소: 거주관할권(1)의 국가와 동일한 해외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여야 한다.  
(거주관할권이 미국에 해당되나 한국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해외주소 기입 생략)
- ※ 복수의 거주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거주관할권 (1), 거주관할권(2)에 해당하는 국가를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.

## 3. 본인 확인

-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,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행에 통지하겠습니다.
- 본인은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.
- 본인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계좌(계약)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 본 인 성명 : (인/ 서명)  
대리인 성명 : (인/ 서명) (관계 : )

